

2025년 「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」 연수업체 모집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5년도 「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」 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2월 13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
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

① 사업목적

-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·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 관련 직무 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 실무인재 양성

② 사업개요

- (지원규모) 실습생 258명 (국내 238명, 글로벌 20명)
 - * 지원규모는 '25년 확정 예산 및 업체-학생(대학)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(지원기간) 국내 4개월(上 3~6월, 下 9~12월), 글로벌 6개월(上 3~8월, 下 7~12월)
- (지원대상)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/대학/학생
 - (연수업체)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,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,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, 기관, 단체

-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- ②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
- ③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
- 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- ⑤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-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
-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, 기업 또는 단체

- (학생)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,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,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

- * 국내과정 :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% 이상 이수자 / 글로벌과정 :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75% 이상 이수자, 실습생 파견국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

- (참여대학)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, 기술대학으로, 학칙에 근거하여 인턴십에 대한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

① 전산·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·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
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·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, 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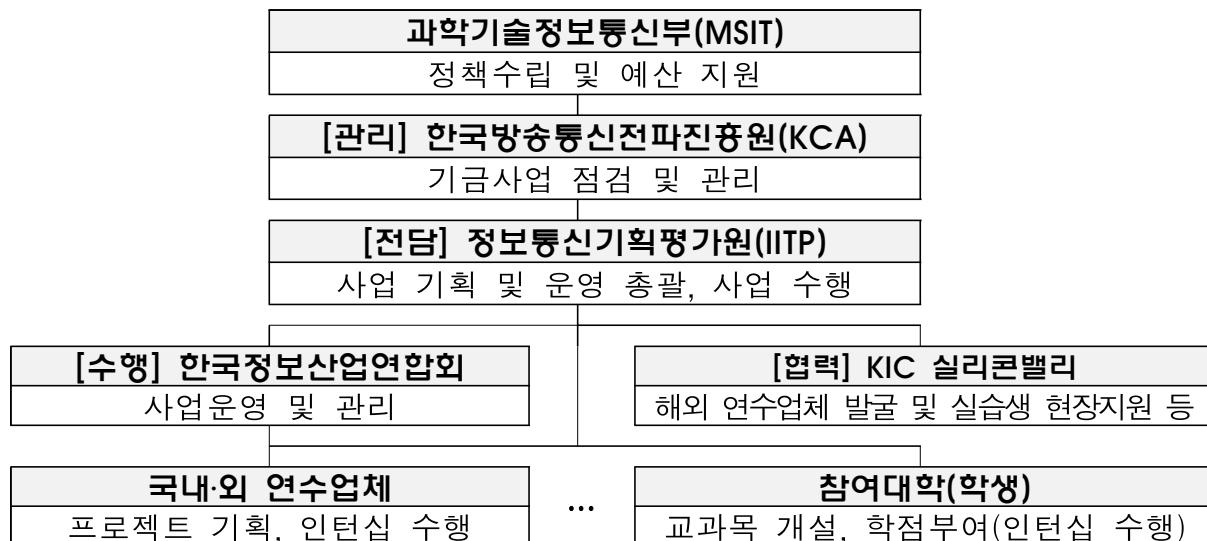
* 과기특성화대학(KAIST, DGIST, UNIST, GIST 등) 포함

- (지원내용)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*

구분	지원대상	지원 항목
국내	연수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턴십 운영 지원금(정부지원) : 월 120만원 × 실습생 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담인력 확보, 실습생 수당 지원,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,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- 상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, 연수업체의 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(계좌 이체 내역 등)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
	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실습생 수당(기업부담) : 최저임금액('25년 기준 2,096,270원/월)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습생 수당은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함
글로벌	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실습생 수당(기업부담) : 월 US \$ 2,000 이상 ■ 체재 준비금(정부지원) : 왕복 항공료*, 비자발급 수수료, 의료보험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편도당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■ 실습생 지원금(정부지원) : 최대 월 150만원*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* 실습생 수당 US \$ 2,400 이상부터 US \$ 300 단위로 지원금 10%씩 감액, 월 US \$ 3,800 이상 시 75만원 지급

*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

- (추진체계)



③ 국내 인턴십 과정

- (지원규모 및 기간) 238명* 내외 / 4개월(上 3~6월, 下 9~12월) 수행

* 상·하반기 120명 수준, 하반기 지원 규모는 상반기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(추진일정)

	①연수업체 접수 마감	②연수업체 선정 평가	③실습생 -업체 매칭*	④인턴십 수행
상반기	~'25.1.9(목)	1월	1~2월	3~6월
하반기	~'25.6.3(화)	6월	7~8월	9~12월

* 연수업체-인턴 간 매칭은 코딩테스트(희망업체에 한함), 서류전형 및 면접 후 확정되며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(연수업체 선정) 인턴십 운영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(지원규모의 1.5배 수준)

평가항목	평가기준	설명
수행역량 (40%)	▶ 기업 건전성, 실습 환경 ▶ 기업의 기술력 현황, 향후 비전 등 ▶ 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	기업 신용도, 근무 환경 등 특허, 수주실적,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지도인력 기술경력, 전문성, 지도경험 등
운영계획 (50%)	▶ 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/ 구체성 ▶ 프로젝트의 교육적 기여도 ▶ 지도계획의 우수성 ▶ 실습생 평가 계획	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실습생 실무역량 측면의 효과 실습생 관리방법,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평가방법 및 절차, 대학 피드백 방법
후속계획 (10%)	▶ 결과물 사업화 및 성과 창출 계획 ▶ 참여 실습생 고용연계 계획	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및 활용계획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

※ 최근 3년(접수 마감일 기준)내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된 실습생이 재직 시 가점 부여(1명 3점, 2명 이상 6점)

※ 연수업체는 실습생을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며,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※ 연수업체로 선정되어도, 상황에 따라 기업-대학(학생)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음

④ 글로벌 인턴십 과정

- (지원규모 및 기간) 미국(실리콘밸리 등) 20명* 내외 / 6개월(上 3~8월, 下 7~12월) 수행

* 상·하반기 10명 수준, 하반기 지원규모는 상반기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(추진일정)

	①연수업체 접수 마감	②연수업체 적격성 검토*	③실습생- 업체 매칭**	④비자 발급	⑤인턴십 수행
상반기	~'25.1.9(목)	1월	1~2월	2~3월	3~8월
하반기	수시접수*	4월	5~6월	6월	7~12월

* 글로벌 과정은 하반기의 경우 수시접수로 연수업체 모집

**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연수업체 적격성 검토 후 승인 통보

*** 연수업체-인턴 간 매칭은 코딩테스트, 서류전형 및 면접 후 확정되며 전체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(지원기준) 실습생 직무 적정성, 기업 건전성, 실습 계획·환경 등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학생 매칭 지원

※ 연수업체는 실습생을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학생 매칭이 안 될 수 있음

⑤ 참여자 의무사항

- (연수업체) 업무환경 선 구축 및 지도인력 지정, ICT관련 직무 부여 등
 - (ICT관련 직무 부여) 연수업체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
 -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·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
 -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
- (업무환경 구축) 실습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, 의자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선 구축해야 하며, 실습생 지도인력을 지정하여야 함
- (학생보호) 국내 연수업체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」 제123조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- (교육시간 배정) 연수업체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(사전 교육,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등) 비율을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함
- (실습생 수당 지급) 국내 연수업체는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생 수당을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며, 해외 연수업체 (미국)는 월 US\$2,000 이상 지급해야 함
 - * 국내과정 연수업체의 경우 실습생 수당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필수이며, 미가입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불가
- (서류협조) 실습생의 인턴십 수행(운영비 지급 및 비자 발급 등) 및 소속 대학의 학점 인정을 위한 제반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및 참여대학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

⑥ 지원 제외 등 유의사항

-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개인 및 법인
- 타국적자 및 외국소재 대학(교) 학생
- 글로벌 과정의 경우, 인턴십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대학(교) 학생
- 타 정부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
- 연수업체-학생 매칭 확정 이후 인턴십이 중단되는 해당 기업 및 학생의 동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가능
-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

⑦ 관련법령 및 규정

-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~제14조
-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

⑧ 신청서 접수

- (접수기간)
 - (상반기 국내/글로벌) 2024.12.13(금) ~ 2025.1.9(목) 17:00 마감
 - (하반기 국내과정) ~ 2025.6.3(화) 17:00 마감
- (제출서류) 공문, 운영계획서 및 요구 서류 등

구분	제출서류
국내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(http://www.ictintern.or.kr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신청공문 ② 운영계획서(서식①) ③ 사업자등록증④ 최근 2개년 재무제표 (상반기: '22년, '23년 재무제표 / 하반기: '23년, '24년 재무제표 제출)⑤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1종 (예) 원천징수 명세, 4대보험 산출내역, 고용보험 산출내역 등⑥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(서식②)※ 관련양식은 공식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
글로벌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(http://global.ictintern.or.kr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신청서(운영계획서 포함) 1부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⑨ 문의처

- (사업문의)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융합인재팀 (☎ 042-612-8473, yslim@iitp.kr)
- (접수문의)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(☎ 02-2046-1466~9, ictintern@fkii.org)
- (협력기관) KIC 실리콘밸리 (hahyha@iitp.kr)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



한국정보산업연합회